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89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이인선·고동진·박충권

김성원 • 최수진 • 성일종

강선영 • 이종욱 • 박성훈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학 교 내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56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생 략)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
	승)
<u> <신 설></u>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u>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u>
	<u>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u>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u>
	장과 교원이 허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②</u> <u>제1항에</u> 따른 교원의 정당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	
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u>제1</u>	<u>⑤</u>
<u>항에</u>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	<u>항 및 제2항에</u>
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